#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64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7.

발 의 자:김민석·박상혁·이상헌

강병원 · 강훈식 · 이용빈

윤후덕 · 강득구 · 이광재

장철민 · 최종윤 · 정청래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보사 사건 후속조치로 약사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취소처분 하고 벌칙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.

그러나 의료기기의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법적 제재 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.

이에 의료기기 품목허가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, 기만,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처분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(안 제36조제1항, 제43조의2,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2부터

제1호의4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####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조업자·수입업자 및 수리업자"를 "제조업자·수입업자·수리업자 및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자"로, "허가 또는 인증"을 "허가·인증·승인 또는 신고 수리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1호·제22호"를 "제1호·제1호의2·제1호의4·제22호"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·제2항, 제12조제1항(제15조제6항, 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15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허가·변경허가 또는 인증·변경인증을 받거나 신고·변경신고를 한 경우
- 1의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
- 1의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3항에 따른 갱신을 받은 경우

제43조의2의 제목 "(인증·신고의 취소)"를 "(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인증을"을 "허가 또는 인증을"로, "인증 또는"을 "허가, 인증 또는"으로 하며,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(종전의 제2호) 중 "인증"을 "허가 또는 인증"으로, "제조"를 "제조하거나 수입"으로 한다.

제51조제1항 중 "제26조제1항을 위반한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
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15조 제1항·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
-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3항에 따른 갱신을 받은 자
- 제52조제1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1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 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
  - 1의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(제15조제6항, 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
  - 1의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·변경허가·승인·변경승인·인증·변경인증 및 갱신을 받거나 신고·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행 개 정 힞} 혂 제36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제36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) ① 제조업자등이 다음 정지 등) ① -----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・수입업 ----- 제조업자·수입업자 자 및 수리업자에 대하여는 식 · 수리업자 및 임상시험의 계획 품의약품안전처장이, 판매업자 승인을 받은 자-----및 임대업자에 대하여는 특별자 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 ·군수·구청장이 허가 또는 인 ----- <u>허가·인증·승</u> <u>인 또는 신고 수리-----</u> 증의 취소, 영업소의 폐쇄, 품목 류 또는 품목의 제조 • 수입 • 판 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·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-- 제1호·제1호의2·제1호 <u>의4·제22호</u> -----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1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· 제2항, 제12조제1항(제15조제6항, 제 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<u>다) 또는 제15조제1항·제2항</u> <신 설>

<신 설>

- 2. ~ 24. (생 략)
- ② ~ ⑤ (생 략)
- 제43조의2(인증ㆍ신고의 취소) ① 제43조의2(의료기기 제조허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 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처가 또는 인증을 -----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. 다 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| <단서 삭제> 인증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 여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경우
  - 2. <u>인증</u>을 받거나 신고하여 <u>제</u> <u>1</u>. <u>허가 또는 인증-----</u>

에 따른 허가 · 변경허가 또는 인증 · 변경인증을 받거나 신 고 · 변경신고를 한 경우

- 1의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
- 1의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3항에 따른 갱신을 받은 경우
- 2. ~ 24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의 취소) ① -----

-----<u>허가, 인</u>증 또는 -----

<삭 제>

조한 의료기기의 품질 관리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

- 3. (생략)
- ② (생략)
- 제51조(벌칙) ① 제26조제1항을 제51조(벌칙) ① -----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.
  - ①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 설> <신 설>

<신 설>

② (생략)

제52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52조(벌칙) ① ------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 제조하거나	수입
711 1 UI / I UI	- 1 · 1 · 1

- 2. (현행 제3호와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-----

  - 1.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
  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6조제1항 · 제2항 또 는 제15조제1항 · 제2항에 따 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
  -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49조제3항에 따른 갱신을 받은 자
  - ② (현행과 같음)
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
	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
	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
<u> &lt;신 설&gt;</u>	1의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
	방법으로 제12조제1항(제15조
	제6항, 제16조제4항 또는 제17
	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
	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변경
	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
	변경신고를 한 자
<u> &lt;신 설&gt;</u>	1의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
	방법으로 제16조제1항 또는
	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
	<u>한 자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